

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선박교통관제구역, 관제대상선박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- 영해 밖의 수역에서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(안 제3조 및 제18조의2)
-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를 경우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지시에 불응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사유를 선박교통관제사에게 알리도록 함(안 제14조).
- 관제통신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함(안 제15조).
- 그 밖에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13조, 제18조, 제20조, 제26조 및 제27조).

II. 검토의견

1. 개정의 취지

- 개정안은 ‘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’(SOLAS) 및 국제해사기구의 ‘선박관제지침’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, 선박교통관제를 영해 내 선박교통관제와 영해 밖 선박교통관제로 구분하고, 영해 밖 선박교통관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임.

- SOLAS 제5장 제12규칙은 선박교통관제는 연안국 영해 내에서만 강제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, 국제해사기구가 마련한 선박교통관제지침은 연안국이 영해 밖의 수역에 대하여도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구 분		영해 내(내수 포함)	영해 밖
선박교통관제	강제적	○(SOLAS)	×
	비강제적	○(SOLAS)	○(선박교통관제지침)

2.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관제

가. ‘영해 밖 관제수역’의 의미

- 개정안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영해 밖 관제수역에 대하여도 해양경찰청장은 일정한 범위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(안 제18조의2),
- 제2조제1호는 “선박교통관제”를 선박의 동정에 대한 관찰 확인 및 선박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, 안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조언 등 역시 선박교통관제에 해당함.

영해 밖 관제수역에 대하여는 영해 밖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(안 제3조제2항), 그 기준이나 한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.

-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관제구역인 영해와 내수에서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고(안 제2조제2항), 영해 밖 수역에 대한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등을 위하여 보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므로, 그 취지를 고려하여 ‘영해 밖 관제수역’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, 허용되는 선박교통관제의 범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(제3조 및 제18조의2 등에서 인용)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~ 5. (생략)	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· 2. (개정안과 같음) 2의2. <u>“영해 밖 관제수역”이란 관제대상선박이 항행하는 영해와 영해사이의 수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.</u> 3. ~ 5. (개정안과 같음)

나. 선박교통관제의 요건

- 안 제18조의2제1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일정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, 같은 조 제2항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에 따른 정보·조언 등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안 제18조의2의 취지는 해양경찰청장이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도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,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권한 행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그런데 안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 또는 조언의 제공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, 안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정보·조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선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에 국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18조의2(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정보 등의 제공) ① 「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」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. 1. 안전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 2.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또는 조언 3. 「기상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4.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조언 ②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제1항에 따른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.	제18조의2(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)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선박교통관제를 할 수 있다. 1.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조언 2.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선박교통정보 제공 또는 조언 3. 「기상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 등의 기상정보 제공 4. 그 밖에 선박교통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조언 ② 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제수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제1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를 관제통신으로 요청할 수 있다. ③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관제통신 실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.

3. 관제통신의 영어 사용 원칙

- 안 제15조제1항은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 선박 선장 간의 통신(관제통신)의 원칙을 규정하면서, 관제통신은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.
- SOLAS는 관제통신에 영어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그 이행을 위하여 안 제15조제1항에서 영어 사용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임.

그런데 선박교통관제는 법에 따른 국가기능의 행사이므로 국어로 행사됨은 당연한 것이라는 점, 국가기능의 행사를 특정한 외국어로 하여야 함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영어 사용의 원칙 부분은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관제통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5조(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) ① <u>관제대상선박의 선장과 선박교통관제사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</u>	제15조(관제통신의 원칙 및 녹음) ① <u>선박교통관제사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제통신을 할 때에는 관련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.</u>
② · ③ (생략)	② · ③ (개정안과 같음)

4. 기타(제3조, 제20조 등)

- 안 제3조는 ‘선박교통관제구역’, ‘영해 밖 관제수역’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, 앞에서 본 수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.
- 안 제14조는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·정박·계류하려는 관제대상 선박의 선장에게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, 동 신고의무 위반 시 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, 제27조제1항제3호는 ‘제14조제6항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’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안 제14조제6항은 ‘신고 절차’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양 규정의 표현에 차이가 있으므로, 이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.
- 기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(전문위원 김 성 완)